

## ■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서약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	본인	• 주택전시관에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(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)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 신청자와의 관계)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○		출입국 사실 증명원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에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일반(기관추천)특별공급 제외 ※ 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
	○		단신부임 입증 서류 (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)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·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○		출입국 사실 증명서	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	•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)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(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•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* 해외에 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* 만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* 만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일반(기관추천)특별공급 제외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단독세대일 경우(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, 이혼한 경우)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복합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※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불(다만,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)
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	
일반 (기관추천)	○		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(인터넷청약의 경우 생략) ※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,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, 국가유공자는 보훈관리명단으로 접수함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	해당 주택	•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결실신고서 등 • "소형·저가주택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• 해당 기관의 당청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	○		위임장	본인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주택전시관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